

의안번호	제12호
의결 년월일	2025. 2. . (제326회)

**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(2024)
시행결과 및 3차년도(2025) 시행계획안**

제출자	금산군수
제출년월일	2025. 2. .

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(2024) 시행결과 및 3차년도(2025) 시행계획안

의안번호	제12호
------	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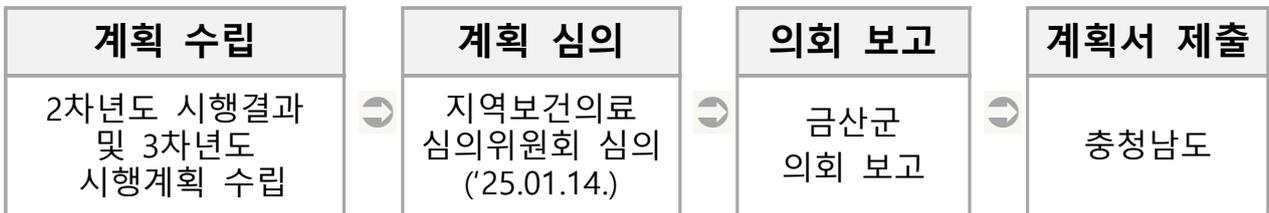
제출년월일 : 2025. 2. .
제 출 자 : 금산군수

1. 제안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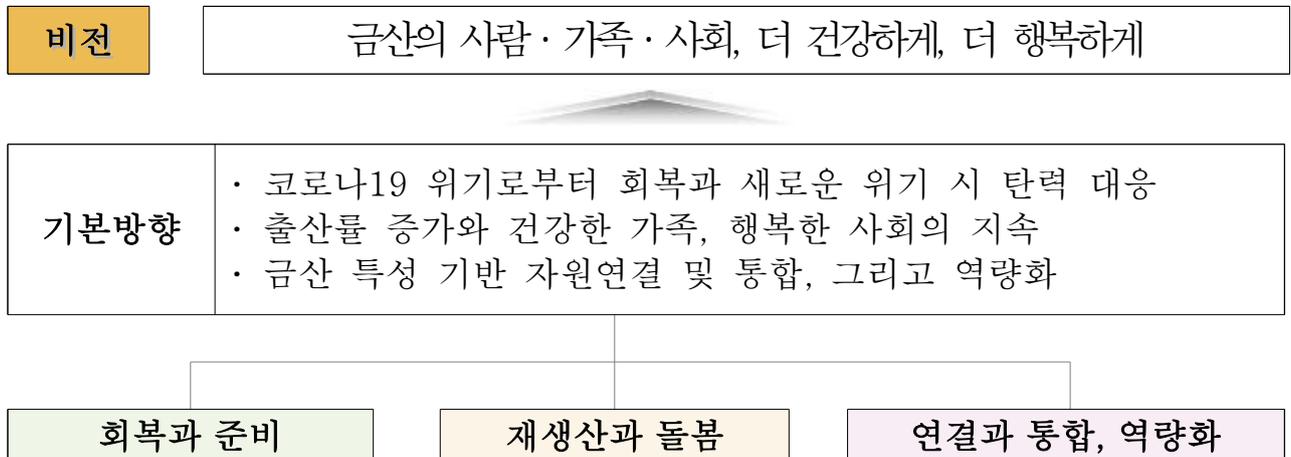
○ 우리 군의 역량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맞춤형계획을 수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계획 수립 절차



○ 제8기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 전략

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 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- 기 타
 - 지역보건의료심의 : 원안가결(보건행정과-880)

관 계 법 령

「지역보건법」

제7조 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8.>
 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 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 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 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 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